

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2-272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(주)골든브릿지자산운용

2. 조치내용 : 과태료 60백만원

3. 조치이유

가.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

-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,
- (주)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‘■■■■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■■■호’ 등 3개 펀드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에서는 환매조건부 채권 매수를 운용방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음에도
 - 20XX.XX ~ 20XX.XX 기간 중 국고채, 통안채 등 채권을 1~4일 후 환매를 조건으로 하여 매수하는 방법으로 펀드 유동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5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제8호, 제449조(과태료)제1항제29호
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7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제4항제1호, 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, [별표22]